

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(제32조 관련)

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	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
1	결원 1인당 10배수
2	결원 1인당 8배수
3 ~ 5	결원 1인당 6배수
6 ~ 10	결원 5인을 초과하는 때 1인당 3배수+30인
11이상	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때 1인당 2배수+45인

비고: 1인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인으로 본다.